

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405호
2. 발 의 자 : 전병주 의원
3. 발의일자 : 2019. 2. 1.
4. 회부일자 : 2019. 2. 7.

II 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,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.

III . 주요내용

1.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에 대한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1항1호라목)

2.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5조제4항).

#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참조
3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전병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405호로 발의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지방계약법’이라 함)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현행 「지방계약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면서 심의 사항의 범위를 각 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- 한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29일 「지방계약법」이 개정되면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고, 같은 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9일 개정되면서 상기의 조문이 신설된 것으로,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나. 조문별 검토

-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「지방계약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호 중 라목을 신설하면서 입찰시 구매규격과 관련하여 사전공개 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sup>1)</sup>
-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바, 같은 법 제9조의2는 이러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, 관련업체가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<sup>2)</sup>.
-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제1항1호라목의 신설은 이러한 상위법의 개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
  - 가.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  - 나.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
  - 다.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- 라.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**
- 2.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- 3.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(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,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,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」,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(2015.11.), 참조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(구매규격 사전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수요물자·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·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 방법·내용·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
- 한편 동 조례안 제5조제4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미한 안전이나 긴급한 사안 및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신속한 의결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
  - 당초 동 조례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회와 관련한 규정이 있었으나, 당시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회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하였는바(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-4546,2016.9.1.3)),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삭제된 내용입니다.
  -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 9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회가 가능하도록 조문이 신설되었는바, 안 제5조4항은 상위법과의 법적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사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3).

**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3) 「현행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을 출석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서면심의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 이는 각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설득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임. 따라서 현행 조례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.」(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-4546,2016.9.1.)

# 관계 법령

##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8. 12. 24.] [법률 제16042호, 2018. 12. 24., 일부개정]

제9조의2(구매규격 사전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수요물자·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·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 방법·내용·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
  - 가.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  - 나.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
  - 다.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  - 라.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
2.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3.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(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,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,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9. 2. 4.] [대통령령 제27491호, 2016. 9. 13., 일부개정]

제107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·용역·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

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④ 계약심의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⑥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(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건"을 "안건"으로, "부정당업자"를 "심의 관련자"로 본다.

제108조(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)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. 다만, 긴급한 재해복구사업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.

1. 시·도위원회: 해당 시·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(물품·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)

2. 시·군·구위원회: 해당 시·군·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(물품·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